

녹스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

서울시에서는 고도정수된 깨끗한 서울의 명품 아리수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녹물 출수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정집에 **녹스 수도배관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**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● **지원 대상** : '94년 4월 이전 건축허가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주거용 건축물

✓ 단 재개발, 재건축,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음

● **공사비 지원금액** : 실제 소요공사비의 80%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지원

주택 유형		표준지원공사비	비 고
단독주택		130만원+(건축연면적-50㎡)x3,850원	최대 150만원
다가구주택		200만원+(건축연면적-50㎡)x3,500원	최대 250만원
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교체	75만원+(전용면적-33㎡)x960원	최대 80만원
	갱생	50만원+(전용면적-33㎡)x1,920원	최대 60만원

✓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: 세대당 40만원 별도지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: 표준지원공사비의 1.6배 지원

● **공사비 지원 절차**

①전화 신청 → ②현장 조사(지원가능 여부 결정) → ③지원신청서 배부 → ④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→ ⑤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통지 → ⑥공사시행 및 완료 → ⑦공사시행 사진(전·중·후) 및 증빙서류
(세금계산서, 영수증) 제출 → ⑧공사부서의 현장검사 → ⑨지원금 지급

✓ 구비서류 : 공사비 지원신청서, 건물주 통장 사본, 공사(지원금 수령 포함) 위임서 위임장 첨부,
견적서 3부(공사금액 500만원 초과일 경우)

● **기타 유의사항 및 공사비 지원문의**

- 노후관 교체(갱생)공사는 사업소에 사전 서면 승인 후 공사 시행
-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주택부분에 한하여 주택 유형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
- 일부 구간만 공사를 하시면 지원이 안되며 반드시 전체공사를 하시는 경우에만 지원
※ 기존에 공사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
- 시공업체는 반드시 수도설비와 관련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



신청 및 문의 : ☎ 3146-2600, 3146-2470~74, 다산콜센터 120

